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채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에 본사가 소재한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 한도 등을 정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3. 26. ~ 4.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 중 “세무공무원”을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이하 “세무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한다.

제65조의5를 제65조의6으로 하고, 제65조의5, 제67조의4 및 제6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법 제84조의3에 따라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채납 또는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은닉재산, 부당 세액공제 금액 등의 확인을 통해 국세의 부과·징수에 기여한 자
2. 국세청 소관 소송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당 소송에 대하여 국세청의 최종 승소판결 확정에 기여한 자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액을 제1항제1호의 자가 부과·징수한 금액 또는 제1항제2호의 자가 승소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포상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에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세무공무원을 기준으로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 및 승소한 금액별 포상금의 지급 범위, 포상금액을 지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7조의4(이행강제금) ① 법 제85조의7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이란 동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사업 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상 수입금액의 합계액
2. 사업 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신고서상 수입금액의 합계액

② 법 제85조의7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 기간은 세무조사 기간(제63조의9제3호다목에 따라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것을 사유로 세무조사가 중지되는 경우 해당 중지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동조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세법상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세법상 장부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복수의 세법상 장부등 중 일부만 제출한 경우 이행 명령의 대상이 해당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85조의7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세법상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67조의5 제1항의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일당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 방법·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통지서 상의 납부기한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① 법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이하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조사의 목적 및 범위에 부합되는지에 관한 사항
2. 납세자가 세법상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세무조사 진

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지에 관한 사항

3. 이행 명령의 대상이 법 제88조에 따른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관한 사항

4. 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등을 고려한 부과금액의 감경 및 면제 필요성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촉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

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의 위촉위원이 4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제7항에 따라 지정된 위촉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위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⑪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촉위원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부과대상자”라 한다)이거나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이하 이 항에서 “해당 세무조사”라 한다)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던 경우

2. 위촉위원이 부과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촉위원이 해당 세무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⑫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은 스스로 그 이행강제금에 관한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7조의4③ 관련)

1. 일반기준

- 가. 이행강제금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에 제67조의4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85조의7제3항 단서에 따라 1일 평균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 이하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다.
- 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목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1일 평균수입금액	부과 비율	1일당 부과금액
15억원 이하	2/1,000	1일 평균수입금액×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1,500	300만원 + (1일 평균수입금액 중 15억원 초과분×2/1,500)
30억원 초과	2/2,000	500만원 + (1일 평균수입금액 중 30억원 초과분 × 2/2,0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u>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u>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한다)</u> ----- ----- ----- ----- ----- ----- -----
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0제2항에 따라 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장부등(이하 “장부등”이라 한	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 ----- ----- ----- -----이하 이 조에서 -----

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 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법 제84조의3에 따라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 또는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은닉재산, 부당 세액 공제 금액 등의 확인을 통해 국세의 부과·징수에 기여한 자

2. 국세청 소관 소송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당 소송에 대하여 국세청의 최종 승소판결 확정에 기여한 자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액을 제1항제1호의 자가 부

제65조의5 (생략)

<신설>

과·징수한 금액 또는 제1항제2호의 자가 승소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포상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에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세무공무원을 기준으로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 및 승소한 금액별 포상금의 지급 범위, 포상금액을 지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5조의6 (현행 제65조의5와 같음)

제67조의4(이행강제금) ① 법 제85조의7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이란 동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사업 개시일부터 직전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상 수입금액의 합계액

2. 사업 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신고서상 수입금액의 합계액

② 법 제85조의7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 기간은 세무조사 기간(제63조의9제3호 다목에 따라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것을 사유로 세무조사가 중지되는 경우 해당 중지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동조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세법상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세법상 장부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복수의 세법상 장부등 중 일부만 제출한 경우 이행 명령의 대상이 해당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85조의7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세법상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67조의5 제1항의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일당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 방법·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통지서 상의 납부기한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 설>

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① 법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이하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조사의 목적 및 범위에 부합되는지에 관한 사항
2. 납세자가 세법상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세무조사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지에 관한 사항
3. 이행 명령의 대상이 법 제88조에 따른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관한 사항

4. 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등을 고려한 부과금액의 감경 및 면제 필요성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촉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의 위촉위원이 4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제7항에 따라 지정된 위촉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위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⑪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촉위원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부과대상자”라 한다)이거나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이하 이 항에서 “해당 세무조사”라 한다)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던 경우

2. 위촉위원이 부과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촉위원이 해당 세무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⑫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은 스스로 그 이행강제금에 관한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 - 4151